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교·부서관·경찰·소방공무원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4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3.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하여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으로서, 이에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복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u><신설></u>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u>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복무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u> <u>1.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u> <u>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u> <u>3.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u> <u>4.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u>
<u>② ~ ④</u> (생략)	<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2. 검토의견

가.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도입되었음.

2026년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여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일정한 상환율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산정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는 군복무 중이거나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 등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임.

현행법상 이자면제 대상은 크게 군복무자, 경제적·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 및 의무상환 유예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¹⁾. 구체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 6. 4., 2019. 12. 31., 2021. 6. 8.>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1. 6. 8., 2023. 12. 26., 2025. 11. 11., 2026. 2. 19., 2026. 5. 19.>

적으로 군복무자에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이 포함되고,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및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등이 포함됨. 아울러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까지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③ 삭제 <2026. 2. 19.>
-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

규정		구분	이자면제 대상
제16조의2 제1항		군복무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제16조의 2 제2항	1~3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출 실행 당시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호	다자녀가구의 자녀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대학원생
	5호	자립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6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7호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2026.11.20. 시행 예정)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
제16조의2 제4항		의무상환 유예자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의무상환이 유예된 사람

□ 이자면제 인원은 2024년 41만 2,879명에서 2025년 46만 6,984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자면제 금액도 같은 기간 166억 5,600만원에서 318억 9,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46만 9,179명에 대하여 188억 6,700만원의 이자가 면제되었음.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4년		'25년		'26년(6월 기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상환법 제16조의2)	1항 (13.5.10.)	군 복무자	26,342	806	10,153	455	8,197	231
	2항 1~3호 (22.1.1.)	수급자/차상위	82,374	1,985	91,425	4,572	94,447	2,966
	2항 4호 (22.1.1.)	다자녀 가구	163,886	8,880	170,820	14,491	174,308	8,275
	2항 5호 (26.5.12.)	자립지원대상자	-	-	-	-	209	0.5
	3항 2항 6호 (24.7.1.) (26.7.1.)	중위소득 100%→130%	133,011	2,705	157,970	8,046	161,201	5,235
	2항 7호 (26.11.20.)	지역대학 중위소득 200%	-	-	-	-	'26.11.20. 시행 예정	
	4항 (24.7.1.)	의무상환유예	24,123	1,292	34,502	3,084	29,265	1,480
	소계		397,201	15,668	447,113	30,648	452,491	18,188
합계			412,879	16,656	466,984	31,898	469,179	18,867

자료 : 교육부

각 인원의 합과 합계 인원의 차이는 중복 자격자로 발생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채무자가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려는 것임.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평균 대출잔액은 약 690만원으로, 2026년 대출금리(연 1.7%)를 적용할 경우 연간 발생하는 이자는 약 12만원(월평균 약 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서, 개정안은 이들의 복무 초기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에서도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간 중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반드시 복무하여야 하므로 소득활동에 제약이 있는 반면, 개정안의 대상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직역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둘째, 현행 이자면제 제도는 군복무자를 제외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및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등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소득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이자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기존 이자면제 대상과 지원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 또한 일반직이나 사회복지직 등 다른 공무원 역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특정 직군들을 우대하여 이자 면제를 지원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기간에 대한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와 다소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